

고용보험 부정수급(부당이득) 반환금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, 제62조, 제106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(부당이득) 반환금 납부고지서(독촉장)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, 국세기본법 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6. 25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



1. 건 명 : 고용보험 부정수급(부당이득) 반환금 납부독촉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35조, 제62조, 제106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주민(법인)등록번호	반환금(원)	주소	서류명칭	송달불능사유
1	제○용	661028-1*****	2,376,000	부산광역시 기장군 구연방곡로106,	납부고지서 등	보관기간경과
2	최○찬	721115-1*****	492,540	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135	납부고지서 등	보관기간경과
3	정○숙	710530-2*****	40,000	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112번길23,	납부고지서 등	보관기간경과
4	김○찬	680621-1*****	396,000	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2길,	납부고지서 등	보관기간경과
5	백○오	710525-1*****	132,000	경상남도 양산시 가촌서로93, 108-1104	독촉고지서 등	폐문부재

4. 공고기간 : 2026. 06. 25. ~ 2026. 07. 12. (18일간)
5. 납부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부산동부지청(3층)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 최슬아(Tel 051-559-669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